



産業災害補償保險

가톨릭의대 교수 李 昇 漢

諸 論

勤勞者가 그生存을 위하여 타인에게 雇傭된 역사는 매우 긴 것이지만, 그過程에서 負傷을 입었을 경우에 补償을 要求할 權利가 確立된 것은 特別한 災害補償制度가 出現한 以後라고 볼 수 있으며, 이 方面에서는 1884년에 獨逸이 立法措置를 取하여 先驅者가 되었고, 바로 이어서 1897년에는 英國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한다. 이리한 制度는 現在에는 모든 先進工業國家에 보편화되었으며, 開發途上國家에서도 점차 보급되어 所謂 社會保障制度의 基礎가 되고 있다.

災害補償法이 마련되기 以前에는 여러 나라의 勤勞者는 負傷을 입었을 경우에도 그代理人으로 하여금 雇傭主를 相對로 하여 补償請求訴訟을 提起하였으나, 裁判의 進行은 느리고 돈이 들고 非能率的일 뿐 아니라 오히려 勤勞者에게 不利한 口實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勤勞者는 雇傭主의 個人的 過失이나 法的 違反 또는 不適格勤勞者의 故意의 雇傭 등을 法廷에서 立證하여야만 하였고 고용에 따른 危險을 自意에 따라 引受하였다고 하여 敗訴를 당하는가 하면, 有効訴訟期間의 滿了로 遺族이 거리를 해메게 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獨逸에서는 1871年에 또 英國에서는 1880년에 使用者責任의 原則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이와 같은 不公平한 경우를 是正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1884년의 독일의 災害補償制度 밑에서는 勤勞者의 災害에 대비해서 고용주로 하여금 非營利機關에 保險加入할 것이 強制化되었고 勤勞者의 受惠도 保證되었는가 하면 全體制度는 독일연방保險局의 行政監督을 받게되고 特別法廷을 통하여 異議가 調停되게 되었다. 반면에 1897년의 英國制度下에서는 고용주는 產業災害에 대한 补償責任을 認定하면서도 保險加入은 强制되지 않았으며, 實地로 私保險 등에 加入하였을 경우에는 补償要求는 勤勞者와 고용주와 保險會社의 3者間에 調停으로 解決되었고, 公的 監督機構도 없었으며 異議는 一般 法廷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常例이었다. 즉 獨逸에서는 勤勞者의 權利의 保護가 國家의 義務로 간주된 반면에, 英國에서는 이를 根本的으로는 아직도 私的問題로 取扱하였던 것이다. 나아가서 獨逸에서는 賃金損失에 對한 現金補償以外에도, 1925년에는 傷害勤勞者の 社會復歸를 위한 再活規程과 障害 및 遺族年金規定을 災害補償制度에 包含시키게 되었다.

英國의 災害補償制度의 短點은 1946년에 이르러 產業災害國民保險法의 制定으로 대폭 补完되었으나, 이 두 나라의 災害補償保險體系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었으며, 產業革命에 따른 社會組織의 변화와 勞動問題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社會政策의 일환으로서의 社會保險制度의 발전에 있어 주축을 이루어왔다고 할

다.

우리 나라의 產業災害補償制度는 工業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現實의 必要性에서 보다는 오히려 社會正義의 입장에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1953년에는 勤勞基準法으로서 또 1963년에는 產業災害補償保險法으로 具體化되었다. 그러나 그 후 2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完遂는 劇的인 生產組織의 擴大를 가져와서 여러 工團을 中心으로 한 25,367個業所(10人以上 規模)에 1,251,503人的勤勞者가 雇傭되는 段階에 이르렀고 이는 앞으로 더욱 느려날 展望이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급격한 工業化 과정에서 農業人口가 工業人口로 轉換되고 있어 새로운 環境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事業主는 生產施設의 擴充에만 注力하는 나머지 勤勞者の 安全은 度外視하는 傾向이 있어 產業災害의 發生도 外國보다 훨씬 많으며 그 發生數는 勤勞者 1,000名당 年間 약 300건에 達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產業災害補償保險法은 1964년에 500人以上 規模의 鎳業·製造業·電氣ガス業·運輸倉庫業에 屬하는 事業體에 적용된 이래로 약 10년간에 16人以上 規模事業體로, 또 鎳業·製造業·建設業·電氣ガス·水道衛生서비스業·商業·運輸保管通信業·서비스業 分類不能事業의 분야까지 擴大適用하게 되었으며, 總適用 勤勞者는 年間 00萬名을 上廻하고 补償規模도 年間 45億원을 超過하는 段階에 이르렀다. 保險事業의 內容도 產業災害에 대한 災害補償에서 점차 再活과豫防을 포함하는 색채를 加味하고 그 實踐面에서는 勤勞基準行政과 勤勞保險行政의 有機的인 融和가 試圖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產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 더욱 擴充됨에 따라 迅速公正한 災害補償으로 勤勞者の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이 이루어지고, 產業災害로 因한 事業主의 危險의 分擔과 輕減으로 企業의 安定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健全한 勞動力의 確保로 國家經濟發展에 이바지할 것이 期待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產業災害補償保險은 社會保障에 관한 法과 勤勞基準法에 根據를 두고 마련된 產業災害補償保險法이 基本이 되어 政府(勞動廳

및 傘下 28個地方事務所) 管掌下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法은 勤勞者の 業務上 災害를 迅速公正하게 补償하는 것을 主要目的으로 하여 制定되었으며 業務上의 負傷, 疾病, 癫疾, 死亡에 對하여 勤勞基準法이 定하는 事業主의 补償責任을 代行하는 外에 一定한 경우에는 勤勞基準法이 定하는 바 보다 以上的 补償을 行하므로써 勤勞者와 家族을 保護하려는 것으로 또한 勤勞者에 對한 直接給與를 가지고서 評價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主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強制로 保險加入者가 되어 保險給與 등 保險事業 遂行을 위한 保險料를 全額 負擔하되 國家는 事務執行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할 수 있으며, 保險料는 賃金總額과 과거 5년間의 災害率로 決定되는 保險料率(1971年 12月 15日 현재 1,000分의 175~2)에 따라 決定되어 強制 適用에서 除外된 事業主라도 勞動廳長의 承認을 받으면 이에 加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業務上 災害

우리 나라 醫療人에게 보다 直接의in 關心거리가 되는 것은 保險給與의 對象이 되는 傷病과 그 內容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다 詳細히 살펴보기로 한다.

被災者가 產業災害補償의 保險給與를 지급받으려면 그 負傷, 疾病, 癫疾, 死亡이 業務上으로 發生하였을 것이前提條件으로 要求되며 이러한 관계는 業務와 災害와 傷病으로 나누어 檢討할 수 있다.

여기에 業務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운영에 관계되는 業務中에서 被災勤勞者が 從事하는 業務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勤勞者の 본래의 業務와相當因果關係가 있는 災害일 경우에는 이를 業務上災害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業務에 從事하지 않았더라면 發生하지 않았을 것으로 認定되고 또한 그와 같은 業務에 從事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이 發生할 危險이 있을 것이라고 認定될 만한 災害를 가리

키는 것이다.

業務上의 災害는 直接 間接으로 負傷, 疾病, 癰疾, 死亡의 原因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業務上의 負傷등이라고 부른다.

災害의 直接的인 결과가 부상인 경우에는 災害의 發生狀況 ‘負傷의 部位등으로 보아 災害와 負傷과의 因果關係 判斷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業務上 外의 認定問題는 주로 업무와 災害와의 因果關係의 문제로歸着시킬수있다.

癰疾은 負傷이나 疾病이 治癒된 뒤에 남는 것 이므로 그 自體로서 業務上 外의 認定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性質上으로 보더라도 精神神經關係를 除外한다면, 療養의 經過등으로 보아 負傷이나 疾病과의 因果關係의 判斷은 쉬운 것이 보통이다.

死亡의 경우로서 卽死는 基礎疾病이나 既存疾病과 關係가 있는 發作에 의한 것과 속크死를 除外한다면 災害와의 因果關係의 判斷은 通常 용이하므로 業務上 外의 문제는 주로 業務와 災害와의 關係로 요약된다. 負傷 또는 疾病과 死亡과의 因果關係는 負傷이나 疾病의 部位, 狀態 療養관계를 보면 쉽게 判斷할 수 있다.

疾病的 경우는 災害로 因한 것 (災害性疾病)과 深侵적으로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 (職業性疾病)이 있어서 복잡하다. 아울러 素因, 基礎疾病, 既存疾病이 發病條件이 되기도 하고 繢發症이나 合併症을 同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業務와 疾病發生에 관하여서는 特수한 문제가 흔히 따르기 마련이다.

災害性疾病的 業務起因性을 가리기 위하여서는 業務上 災害라고 할 만한 突發的 事件 또는 그 發生狀態를 時間의 場所의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事件의 存在與否를 본다. 同時に 災害의 性質, 強度, 作用部位, 時間의 經過, 作業環境條件, 作業의 態樣, 作業時間, 症狀經過, 臨床 檢查 등을 基礎로 判斷하게 된다.

職業性疾病은 業務中에 늘 存在하는 有害條件등으로 해서 必然的으로 罹患할 수 있는 疾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원인을 時間의으로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個個의 事例에 관하여 罹患된 勤勞者가 구체적으로 그 業務起

因性을 立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長期間에 걸친 臨床醫學的, 病理解剖學的, 疫學的研究를 거쳐서相當한 評價성이 있는 疾病의 종류를 미리 규정하여 두고, 一定한 직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에게 그러한 직업성 疾病이 발생하면 일단 業務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와 같은 疾病을 발생케 한 作業內容, 作業환경 등이 認定될 경우에는 反證이 없는 한 業務上 疾病으로 取扱한다(認定基準이 있음).

勤勞基準法施行令 第54條에 規定된 業務上 疾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業務上의 負傷에 기인하는 疾病
- 2) 重激한 業務로 인한 筋肉, 肌, 關節의 疾病과 內臟脫
- 3) 高熱, 刺戟性가스나 蒸氣, 有害光線 또는 異物로 인한 結膜炎, 기타의 眼疾患
- 4) 라듐放射線, 紫外線 X線 기타 有害放射線 으로 因한 疾病
- 5) 暑熱한 場所에 있어서의 業務로 因한 日射病 및 熱射病
- 6) 暑熱한 場소에 있어서의 業務 또는 高熱物體를 取扱하는 業務로 인한 第2度以上의 热傷 및 寒冷한 場所에 있어서의 業務 또는 低溫物體를 取扱하는 業務로 因한 第2度以上의 凍傷
- 7) 粉塵을 飛散하는 場所에 있어서의 業務로 인한 壓肺症 및 이에 따르는 肺結核
- 8) 地下作業으로 인한 眼球震盪症
- 9) 異常氣壓下에 있어서의 業務로 因한 潛函病 기타의 疾病
- 10) 製糸 또는 紡績 등의 業務로 인한 手指蜂窩織炎 및 皮膚炎
- 11) 鑿岩機, 鑿打機 등의 使用으로 인하여 身體에 顯著한 振動을 주는 業務로 인한 神經炎 기타의 疾病
- 12) 強烈한 騒音을 發하는 場所에 있어서의 業務로 因한 耳疾患
- 13) 電信手, 타이피스트, 筆耕手 등의 手指의 痙攣 및 書痙
- 14) 鉛, 그 合金 또는 化合物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15) 水銀, 아밀감 또는 그 化合物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16) 망강 또는 그 化合物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17) 크롬, 닉켈, 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潰瘍 기타의 疾病
- 18) 亞鉛 其他의 金屬蒸氣로 인한 金屬熱
- 19)砒素 또는 그 化合物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20) 燐 또는 그 化合物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21) 硝氣 또는 亞硫酸ガス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22) 硫化水素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23) 二硫炭素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24) 一酸化炭素로 인한 中毒 및 그 續發症
- 25) 青酸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中毒과 그 續發症 또는 기타의 疾病
- 26) 鎳酸, 苛性알카리, 鹽素, 弗素, 石炭酸 또는 以上의 化合物 기타 腐蝕性 또는 刺戟性의 物體로 인한 腐蝕, 潰瘍 및 炎症
- 27) 벤젠 또는 그 同族體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誘導體로 因한 中毒 또는 그 續發症
-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溶劑로 因한 中毒 또는 그 續發症
- 29) 前二號以外의 脂肪族 또는 芳香族의 炭化水素化合物로 因한 中毒 및 그 續發症 기타의 疾病
- 30) 媒煙, 鑛物油, 楠油, 漆 탈, 세멘트 등으로 因한 蜂窩議炎, 濕疹 기타 皮膚疾患
- 31) 媒煙, 탈, 퍽치, 아스팔트, 鑛物油, 파라핀 또는 以上의 物質을 포함한 것으로 因한 原發性上皮癌
- 32) 第14號乃至第31號에 揭記한 것 以外의 毒性, 劇情 기타 有害物로 因한 中毒 및 그 續發症 또는 皮膚 및 粘膜의 疾患
- 33) 患者的 檢診, 治療, 看護 기타 病原體로 因하여 汚染할 우려가 있는 業務로 因한 각종 傳染性疾患
- 34) 濕潤地에 있어서의 業務로 因한 와일氏病
- 35) 屋外勞動에 起因하는 惡蟲病

- 36) 動物 또는 그 屍體, 獸毛, 皮革 기타 動物性의 物體 및 痘마 기타 古物의 取扱으로 因한 炭疽病, 丹毒, 폐스트 및 瘡瘍
- 37) 前各號 以外의 中央勞動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疾病
- 38) 기타 業務로 因한 것이 명백한 疾病(腦出血, 만성心臟死等은 論難이 많음)

保險給與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規定된 保險給與에는 療養給與, 休業給與, 障害給與, 遺族給與, 葬儀費, 一時給與, 遺族特別給與가 있으며 前 6 者는 大體로 勤勞基準法에 规定된 災害補償의 项目에 相應하는 것이다, 保險給與는 諸般申請書類의 提出과 保險管理當局의 承認으로 이루어졌다.

1. 療養給與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서 8日以上的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 療養費의 全額(診療費算定基準表와 同解說에 따름)을 給與額으로 하되 勤勞廳長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指定한 醫療機關(現在 全國 710個 機關)에서 療養을 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費를 支給한다.

療養給與의 範圍는

- 1) 診察(初診, 再診, 特診)
-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義肢, 助器, 치아補綴, 补聽器, 眼鏡, 義眼, 義耳)
- 3) 處置 手術 기타의 治療
- 4) 醫療施設에의 收容
- 5) 介護
- 6) 移送(初回收容, 轉院, 遠距離通院)
- 7) 기타 勤勞廳長이 定하는 事項이다

2. 休業給與

療養으로 因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8일 이상일 때에 支給하며, 就業하지 못한 期間中 1일에 對하여 平均 賃金의 100分의 60에 該當하는 金額이 給與額이다.

3. 障害給與

業務上의 負傷이나 疾病이 完治되고 이와 相

當因果關係가 있는 障害가 남을 때에 年金 또는 一時金으로 支給한다. 단, 完治란 의학적으로 治療效果를 期待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症狀이 固定된 상태를 가리킨다. 또 障害라 함은 完治後에 身體에 殘存하는 永久의 精神 또는 肉體의 毀損狀態로 말미암아 발생한 勞動能力의 상실 또는 減少를 의미한다.

身體障害는 제 1 표와 같이 14個 等級으로 區分되어 있으며 눈, 귀, 코, 입, 頭頸部, 精神神經, 胸腹部, 臟器, 體幹, 上肢, 下肢에 걸쳐 25個의 障害系列를 구별하고 아울러 程度(序列)를 감안해서 총 129종의 身體障害를 揭記한 身

제 1 표 장해금여액

| 장해등급 | 급여액(평균임금기준) | | 장해도 |
|---------|-------------|---------|------|
| | 연금 | 일시금 | |
| 제 1 등급 | 240일분 | 1,340일분 | 100% |
| 제 2 등급 | 213 | 1,190 | 100 |
| 제 3 등급 | 188 | 1,050 | 100 |
| 제 4 등급 | | 920 | 92 |
| 제 5 등급 | | 790 | 79 |
| 제 6 등급 | | 670 | 67 |
| 제 7 등급 | | 560 | 56 |
| 제 8 등급 | | 450 | 45 |
| 제 9 등급 | | 350 | 35 |
| 제 10 등급 | | 270 | 27 |
| 제 11 등급 | | 200 | 20 |
| 제 12 등급 | | 140 | 14 |
| 제 13 등급 | | 90 | 9 |
| 제 14 등급 | | 50 | 5 |

體障害等級表가 마련되어 있다.

系列를 달리하는 身體障害가 2個以上 있을 때에는 併合等級(第 5 級以上 障害가 둘 있으면 3個級, 第 8 級以上 障害가 둘 있으면 1個級 繼上)을 定하고, 身體障害等級表에 揭記되지 않은 障害에 대하여서는 準用等級을 매기며 既存障害가 있었으면 그만큼의 紙與額을 控除한다. 平均賃金의 变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 变동은 年金算定에 反映된다.

4. 遺族給與

業務上 死亡에 對하여 受給權者의 撰擇에 따라 年金 또는 1,000日分의 一時金을 妻, 子女, 父母, 孫 또는 祖父母에게 支給한다.

5. 遺族特別給與

事業主의 故意 또는 重大過失로 災害가 발생하여 勤勞者가 死亡 하였을 경우에는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給與와는 별도로 1,000日分의 遺族特別給與를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받으면 保險加入者와受給權者사이에 民事訴訟法의 규정에 의한 裁判上의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간주되고 和解는 文書로 하되 効力은 遺族全體에 미친다.

6. 葬儀費

業務上 死亡이 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葬祭를 행한 사람에게 平均 賃金 90日分의 葬儀費를支給한다.

7. 一時給與

業務上 負傷이나 疾病으로 療養給與를 받은 근로자가 療養開始後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紙與額은 平均 賃金의 1,340日分이고 支給은 勞動廳長의 決定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行하였을 때에는 다른 保險給與는 하지 않는다.